



2026년 시행 지방세 세법개정안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

세제분석2과 신미정 분석관

2026년 시행 지방세 세법개정안 심의 경과 및 결과

- 제430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(2025.12.30.)에서 2026년 시행 지방세 세법개정안이 심의·의결되었기에, 그 결과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자 함
- 지방세 세법개정안 심의 경과
 - 11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세 관련 세법개정안인 정부 제출개정안(10월 16~17일 제출) 및 의원 발의 법률안 190건 상정·심사
 -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3회 진행(12.4(목), 9(화), 10(수))
 - 12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완료한 지방세 관계법률안 5건 의결
 - 지방세법, 지방세기본법, 지방세징수법, 지방세특례제한법,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법
 - 12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완료 후 의결
 - 12월 30일 본회의에서 지방세 관련 법률안 중 「지방세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2건의 위원회안(대안) 상정·가결
 - 지방세기본법, 지방세징수법,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법 3건은 본회의 부의

[표 1] 주요 심의 경과

| 일자 | 주요내용 |
|-------------------|---|
| '25.10.16.~10.17. | 정부 지방세 세법개정안 5건 제출 |
| '25.11.27. |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 세법개정안 상정(190건) *의원발의 185건, 정부제출 지방세 세법개정안 5건 |
| '25.12.4~12.10. |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총 3회 개최 |
| '25.12.16. |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|
| '25.12.18. |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·의결 |
| '25.12.30. | 제430회 국회(임시회) 제3차 본회의 의결 *지방세법, 지방세특례제한법 2건 대안가결(2026.1.1. 시행) |

- 이번 지방세 세법개정의 주요 개정사항은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상, 지역별 감면을 차등 지원, 비수도권·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, 출산·양육 지원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등
 - (지방세법)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상,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,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율 한시 감면 등
 - (지방세특례제한법) 산업·물류·관광 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, 생애최초 및 출산·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, 비수도권/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등



지방세 개정세법
주요내용

▪ 법인세 세율 인상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연동 인상

- 「법인세법」 개정 연계사항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.1%p 인상
- 「법인세법」 개정(2025.12.2. 국회 본회의 원안가결)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1%p 인상

[표 2] 법인지방소득세율 개정내용

| 구분 | 개정 전 | | 개정 후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|
| | 과세표준 | 세율 | 과세표준 | 세율 |
|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| 2억원 이하 | 0.9% | 2억원 이하 | 1.0% |
| |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| 1.9% |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| 2.0% |
| |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| 2.1% |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| 2.2% |
| | 3천억원 초과 | 2.4% | 3천억원 초과 | 2.5% |

▪ 산업·물류·관광 단지 등에 대한 지역별 감면 차등 지원

-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·물류·관광 단지 등에 대해 수도권, 비수도권, 인구감소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감면 차등 지원
-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

[표 3] 지역별 감면을 차등

| | | 개정 전 | | 개정 후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산업 단지 | 시행자 | 수도권 | 취득세 35% 재산세 35% | 수도권 | 취득세 15% 재산세 15% |
| | | 비수도권 | 취득세 35% 재산세 60% | 비수도권 | 취득세 35% 재산세 50% |
| | 입주자 | 수도권 | 취득세 50% 재산세 35% | 수도권 | 취득세 35% 재산세 35% |
| | | 비수도권 | 취득세 50% 재산세 75% | 비수도권 | 취득세 50% 재산세 60% |
| | | | 인구감소지역 | 취득세 50% 재산세 60% | |
| 물류 단지 | 시행자 | 취득세 35% 재산세 25% | | 수도권 | 취득세 25% 재산세 15% |
| | | | | 비수도권 | 취득세 35% 재산세 25% |
| | | | | 인구감소지역 | 취득세 50% 재산세 35% |
| | 입주자 | 취득세 50% 재산세 35% | | 수도권 | 취득세 35% 재산세 25% |
| 비수도권 | 취득세 50% 재산세 35% | | | | |
| 인구감소지역 | 취득세 75% 재산세 50% | | | | |
| 관광단지 시행자 | 취득세 25% | | 수도권 | 취득세 10% | |
| 비수도권 | | | 취득세 25% | | |
| 인구감소지역 | | | 취득세 40% | | |

▪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 부동산경기 활성화 지원

- 생애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한도 확대 (200만원→300만원)
- 수도권 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감면 대상에 신축 이외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추가
-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취득 시 취득세 25% 감면 적용 대상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
 - 인구감소지역은 시행령으로 취득세 감면 적용 주택 가액 기준 상향 (3억원→12억원)

[표 4] 비수도권·인구감소지역 등 지방 부동산경기 활성화 지원 개정내용

| | 개정 전 | 개정 후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| (감면한도) - 전용면적 60㎡ 이하, 취득당시가액 3억원 이하(수도권 6억원 이하) 공동주택(아파트 제외) 등: 최대 300만원 - 그 외 12억원 이하 주택: 최대 200만원 | (감면한도) <동일> |
| | | - 인구감소지역 소재 12억원 이하 주택: 최대 300만원 |
| | (적용기한) 2025.12.31. | (적용기한) 2028.12.31. |
|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취득에 대한 감면 | (감면대상) - 수도권 외 지역 미분양 신축아파트(전용면적 85㎡이하, 3억원 이하)를 임대목적으로 취득 시 | (감면대상) <동일> |
| | | - 수도권 외 지역 미분양 아파트(전용면적 85㎡이하, 3억원 이하)를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신축 이외 주택 포함 |
| | (적용기한) 2025.12.31. | (적용기한) 2026.12.31. |
|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| -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유상거래 시 취득세 25% 경감 | -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주택 유상거래 또는 신축 시 취득세 25%(최대 75만원) 경감 |
| | | |
| | (적용기한) 2026.12.31. | (적용기한) 2028.12.31. |

▪ 출산·양육 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및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대상 추가

- 출산·양육 지원을 위해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
- 서민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대상 추가

[표 5] 출산·양육 지원 등 개정내용

| | 개정 전 | 개정 후 |
|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출산·양육 목적의 주택에 대한 감면 | (적용기한) 2025.12.31. | (적용기한) 2028.12.31. |
| 공공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| (감면대상)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 | (감면대상) <감면대상 추가> |
| | |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|

▪ 기타 지방세 관계법 개정내용

- 빈집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지방세 감면 신설
-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 시행 및 경감세율 적용(2년간 50%)
 - 「담배사업법」¹⁾ 개정으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합성니코틴 담배가 포함되며, 2025년 12월 23일 일부개정된 「담배사업법」이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되므로 이에 맞추어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개정 이후 시행될 예정
 -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관련 영세 사업자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경감세율(50%) 적용
- 국민의 안전을 위해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한 숙박시설에 대해 지방세 감면 신설
-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신설 및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시 발전연료에 따라 세율 차등화
 -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

[표 6] 기타 지방세 관계법 개정내용

| 구분 | 개정 전 | 개정 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빈집 정비 등에 대한 감면 | <신설> | (감면내용) - 빈집 철거 토지 5년간 재산세 50% 감면 - 철거 후 신축 시 취득세 25% 감면 (적용기한) 2028.12.31. |
|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 시행 및 경감세율 적용 | (과세대상) -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담배 | (과세대상) -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 단, 합성니코틴 담배는 경감세율 적용 (2년간 50%) |
| 스프링클러설비 등 설치 숙박시설에 대한 감면 | <신설> | (감면내용) - 소방시설 중 스프링클러설비 등 설치 숙박시설에 대해 지방세 감면 (감면세목 및 감면율) - 취득세 100% 면제 - 재산세 2년간 100%, 3년간 50% 감면 (적용기한) 2028.12.31. |
|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| (세율) - 화력발전: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0.6원 | (세율) - 화력발전: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0.7원 단, 액화천연가스 연소 발전 시 0.6원 |
| | <과세대상 추가> | (과세대상) - 폐기물매립시설(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 공동으로 설치 시)에 매립되는 폐기물 (세율) - 폐기물 매립량 톤당 6천원 (시행일) 2026.7.1. |

1) 「담배사업법」(법률 제21216호, 시행 2026.4.24.) 제2조 제1호 “담배”란 연초(煙草)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, 빨거나, 증기로 흡입하거나, 씹거나,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. 다만, 「약사법」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한다.